

감 사 보 고 서

그리스도대학교 총장

그리스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우리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스도대학교의 산학협력단 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예·결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·현금흐름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그리스도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예·결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와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5년 4월 17일

(감사인) 한 명 철 (인)

(감사인) 양 상 용 (인)